

개 호 보 험 제 도

나 고 야 시

2018 년도

개호 보험 제도

본 시를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75 세 이상이 되는 2025 년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특히 75 세 이상의 고령자 외에 독거 노인이나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인지증의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제도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의 상황이나 가족의 희망에 따라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노후의 최대 불안 요인인 개호 문제를 사회 전체가 지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 호 보 험 의 재 원 >

○ 재택서비스의 경우

공비 50%	국가 20%	국가의 조정 교부금 5%*2	도도부현 12.5%	시정촌 12.5%
보험료 50%	제 1 호 피보험자 (65 세이상인 분)의 보험료 23%*1		제 2 호 피보험자 (40~64 세인 분)의 보험료 27%	

○ 시설 등 서비스의 경우

공비 50%	국가 15%	국가의 조정 교부금 5%*2	도도부현 17.5%	시정촌 12.5%
보험료 50%	제 1 호 피보험자 (65 세이상인 분)의 보험료 23%*1		제 2 호 피보험자 (40~64 세인 분)의 보험료 27%	

※ 1 나고야시는 약 23.5% (2018 년도)

※ 2 나고야시는 약 4.5% (2018 년도)

1. 기관

본 시에서는 구청의 복지과가 창구가 되어, 피보험자 자격, 요 개호인정 등, 보험료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실시하며, 지소 구민 복지과에서도 피보험자 자격, 요 개호인정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신청 우편접수 및 인정 통지 발송 등의 업무는 인정 사무센터에서 집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개호보험에 가입하는 분)

피보험자에는 제 1 호 피보험자와 제 2 호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제 1 호 피보험자	본 시에 주소를 소유하는 65 세이상인 분
제 2 호 피보험자	본 시에 주소를 소유하는 40~64 세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

나고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은
나고야시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 주민등록을 하신 분
- 적격한 재류자격을 소유하고, 3 개월을 넘어서 일본에 체류 예정인
분(입국관리국이 인정한 것. 단, 대사관원 등 공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 분은
제외합니다.)
- 40 세 이상인 분 (단, 65 세 미만인 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체류기간이 3 개월이하라도 생활 실태로 봐서 3 개월을 넘어서 체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분은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구의 구청 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 복지과로 신청해 주십시오.

피보험자증은 제 1 호 피보험자 전원과, 제 2 호 피보험자 중에 보험증의 교부 신청이 있었던 분 및 요 개호인정 등의 신청을 하신 분에게 교부됩니다.

3. 개호 보험료

(1)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

보험료 금액은 소득 등에 따라서 1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2018 년도부터 2020 년도 각 년도에 납부하실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료 금액

보험료 단계 구분		보험료(연액)	
제 1 단계	생활보호 등을 받고 있는 분, 또는 노령복지연금 수급자로서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인 분	30,679 엔 (기준액×0.4)	
제 2 단계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본인의 연금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30,679 엔 (기준액×0.4)
제 3 단계		본인의 연금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80 만엔을 넘어 120 만엔 이하인 분	49,853 엔 (기준액×0.65)
제 4 단계		본인의 연금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120 만엔을 넘는 분	57,522 엔 (기준액×0.75)
제 5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이며 같은 세대에 시정촌민세 과세자가 있음	본인의 연금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제 6 단계		본인의 연금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련된 소득분을 제외)의 합계가 80 만엔을 넘는 분	76,696 엔 (기준액)
제 7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80 만엔 미만인 분	80,531 엔 (기준액×1.05)
제 8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80 만엔 이상 125 만엔 미만인 분	84,366 엔 (기준액×1.1)
제 9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125 만엔 이상 200 만엔 미만인 분	95,870 엔 (기준액×1.25)
제 10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200 만엔 이상 290 만엔 미만인 분	115,044 엔 (기준액×1.5)
제 11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290 만엔 이상 400 만엔 미만인 분	130,384 엔 (기준액×1.7)
제 12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400 만엔 이상 540 만엔 미만인 분	145,723 엔 (기준액×1.9)
제 13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540 만엔 이상 700 만엔 미만인 분	161,062 엔 (기준액×2.1)
제 14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700 만엔 이상 1,000 만엔 미만인 분	176,401 엔 (기준액×2.3)
제 15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1,000 만엔 이상인 분	191,740 엔 (기준액×2.5)

-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10 엔미만의 끝수를 버린 금액이 됩니다.
- 연금수입에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합계 소득금액이란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의 연금소득, 급여소득, 사업소득, 토지·건물 등이나 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 등을 합제한 금액입니다. 또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관련된 특별공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공제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나. 납부 방법

노령·퇴직·유족·장애연금 중 하나라도 연액 18 만엔 이상 수급하고 계신 분은 연금에서 공제(특별징수)합니다. 특별징수 이외인 분은 계좌이체(자동이체), 또는 납부서로 납부(보통징수)합니다.

다. 보험료 납부의 유예·감면

재해를 당해 주택 등이 현저하게 손해를 입었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장기입원하는 등으로 인해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분은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개호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 복지과로 상담하십시오.

라. 미납자에 대한 조치

지정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압류를 위해 근무처에 대한 급여조사 등의 재산조사가 이루어지며 재산 압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보험료를 1 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며 개호 서비스·개호예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호보험 급부에 대해 제한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를 받더라도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1 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호 서비스·개호예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 전액을 일단 이용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구청에 신청하면 보험급부가 후일 환급됩니다.

○ 보험료를 1 년 6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호 서비스·개호예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 전액을 일단 이용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구청에 신청해도 보험료 급부 환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 보험료를 2 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인상되어(※), 고액개호 서비스비 등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 부담 10% 또는 20%인 분 → 30%

이용자 부담 30%인 분 → 40%(2018 년 8 월~)

(2) 제2호 피보험자 (40~64세인 분)의 보험료

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

매달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지불합니다. 또, 세대주가 세대원의 몫까지 합쳐서 지불합니다.

나. 건강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고 있는 분

매달 의료보험료와 아울러 지불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40~64 세의 피보험자가 부담하여 지불합니다.

4. 개호 서비스

(1) 개호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

개호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요 지원·요 개호 인정을 받은 다음과 같은 분입니다. 이 인정에는 요 지원 1·2와 요 개호 1~5의 7가지 구분이 있어 인정 조사 결과와 주치의의 의견서를 토대로 각 구에 설치된 보건·의료·복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 인정 심사회에서 심사·판정을 실시합니다.

제 1 호 피보험자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질병이나 부상 등 개호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관계없이 개호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제 2 호 피보험자	뇌혈관질환이나 관절류머티즘 등, 가령으로 인한 16 종류의 질병에 따라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 요 개호 인정 등의 신청

신규 신청·구분 변경 신청 접수는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 복지과가 창구가 됩니다. 갱신 신청 접수는 개호 인정 사무센터로 우송해서 제출합니다.

본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이키이키 지원센터나 지정 재택개호지원사업자, 개호보험시설 등에 신청을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것

- 65 세 이상인 분(제 1 호 피보험자)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
- 40~64 세인 분(제 2 호 피보험자)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

(2) 개호 서비스 등의 내용

개호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다음 재택계 서비스와 시설·거주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택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요 간호자는 거택 간호 지원사업자에게 요 지원자는 지역포괄지원센터로부터 서비스계획(케어 플랜)을 작성받아야만 합니다.

★이키이키 지원센터(지역포괄지원센터)란

이키이키 지원센터는 고령자의 신변 상담창구로서 지구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키이키 지원센터에는 보건사·사회복지사·주임간호지원전문원 등이 배치되어 있어 요 지원인정자의 케어 매니지먼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택관련 서비스

가정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1. 방문간호 (홈 헬프서비스)	홈 헬퍼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나 가사를 원조합니다.
	2. 야간대응형 방문간호	홈헬퍼 등이 야간에 방문하여 간호를 합니다
	3. 방문 입욕간호	욕조를 실은 입욕차로 가정을 방문하여, 입욕 간호를 합니다.
	4.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또는 진료의 원조를 합니다.
	5. 방문 물리치료	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리허빌리테이션을 실시합니다.
	6.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간호간호	낮·밤을 통해서 방문간호와 방문간호가 연계하면서 단시간의 정기순회형의 방문과 수시의 대응을 합니다.
	7. 재택요양관리지도	의사, 치과의, 약제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영양상의 관리와 지도를 실시합니다.
	8. 복지용구 대여	휠체어, 특수침대나 슬로프 등의 복지용구 대여를 합니다. (요 간호도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9.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복지용구를 구입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10. 주택 개축비의 지급	간호를 위한 소규모 주택 개수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11. 생활 원조형 급식서비스 (시정촌 특별급부)	이용자의 자택에 식사를 배달함과 동시에 본인의 안부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연락합니다.
당일치기로 다니는 서비스	12. 통소개호 (데이서비스)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입욕이나 식사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호를 합니다.
	13. 인지증 대응형 통소개호	인지증(치매)인 분을 대상으로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입욕과 식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호를 합니다.
	14. 통소 물리치료 (데이케어)	시설 등에서 의사의 지시 아래, 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 등이 리허빌리테이션을 실시합니다.
단기입소 서비스	15. 단기입소 생활간호	단기간, 특별요양노인홈 등의 시설에 입소하여 간호를 합니다.
	16. 단기입소 영양간호	단기간, 간호노인보건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하여 의학적 관리 아래 간호 등의 간호를 합니다.
기타 서비스	17.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간호	사업소로의 '출퇴근' 서비스 외에 '방문'이나 '숙박' 서비스를 편성하여 제공합니다.
	18.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간호와 방문간호 등의 복수의 서비스를 조합해서 제공합니다.
	19. 재택간호지원	간호지원전문원(케어 매니저)이 간호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요 간호인 분만 대상)
	20. 간호예방지원	본인이나 가족과 더불어 간호 예방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요 지원인 분만 대상)

◆ 재택계 서비스 이용한도액

재택관련 서비스에는 요 지원·요 개호의 정도에 따라 이용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택요양관리지도,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주택 개축비의 지급, 생활 원조형 급식서비스(시정촌 특별급부)는 제외합니다.)

요 지원 1	1 개월당 5,003 단위
요 지원 2	1 개월당 10,473 단위
요 개호 1	1 개월당 16,692 단위
요 개호 2	1 개월당 19,616 단위
요 개호 3	1 개월당 26,931 단위
요 개호 4	1 개월당 30,806 단위
요 개호 5	1 개월당 36,065 단위

시설·거주관련 서비스

시설·거주관련 서비스는 요 개호 1~5로 인정된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인지증인 분이 소인원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호를 합니다.(요 지원 2인 분도 대상이 됩니다.)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지정을 받은 특정시설에 입주해 있는 분에게 그 시설이 실시하는 개호 등의 서비스입니다.(요 지원 1·2인 분도 대상이 됩니다.)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입주자 생활개호	정원 29명 이하인 특정시설에서 개호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개호 노인 복지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항상 개호가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개호가 곤란한 거동불능 환자나 치매인 분에 대하여, 개호를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 요 개호 3~5로 인정된 분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밀착형 개호 노인복지 시설(특별양호노인홈)	정원 29명 이하의 소규모 특별양호노인홈입니다. ※원칙적으로 요 개호 3~5로 인정된 분이 대상이 됩니다.
개호 노인 보건시설	비교적 증상이 안정되어, 개호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분에 대하여, 간호·의학적 관리 하에 개호나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장기에 걸친 요양이 필요한 분에게 간호·의학적 관리하에 개호와 필요한 의료 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개호의료원	장기 요양을 위한 의료와 일상생활상의 개호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공생형 서비스

2018 년 4 월부터 방문개호·통소개호·지역밀착형 통소개호·단기입소 생활개소·예방전문형 방문 서비스·예방전문형 통소 서비스는 공생형 서비스로서 자리매김되어 장애가 있는 분이 개호보험을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 이용했던 장애복지사업소로부터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케어매니저나 현재 이용하시는 사업소 등에 확인하십시오.

5.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1)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 가능한 분(사업 대상자)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요 지원인정을 받으시거나 또는 기본 체크리스트에 의한 판정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개호·요 지원 인정 신청하시고 그 결과가 비해당이셨던 분이라도 별도 기본 체크리스트에 의한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체크 리스트 기입

창구는 거주지 지역을 담당하는 이키이키 지원 센터 또는 거주지 구의 구청 복지과·지소 구민 복지과입니다.

창구에서 기본 체크리스트 용지를 배부해 드리니 기재된 질문에 대해 본인 상태에 해당하는 선택 항목을 선택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체크리스트’에 의한 판정은 당일 결과가 압니다.

◆ 창구에서 필요한 것

- 65 세 이상인 분(제 1 호 피보험자)
개호보험피보험자증

(2)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내용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립한 생활을 목적으로 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1.예방전문형 방문 서비스 홈ヘルパー가 자택을 방문해서 생활기능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체개호 및 청소·선택 등의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생활지원형 방문 서비스 나고야시가 개최하는 개호나 생활지원기술을 배우는 연수를 종료한 분 등이 자택을 방문하여 자립을 목적으로 한 계획 아래 청소, 세탁, 조리 등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지역 지원형 방문 서비스 지역의 활기찬 고령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가 자택을 방문하여 쓰레기 배출이나 전구 교환 등 일상생활에서 좀 곤란한 일에 대한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지역 지원 수첩 교부 시 실비 300 엔이 필요합니다.

당일치기로 다니는 서비스	3.예방 전문형 통소 서비스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식사·입욕 등의 간호나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4.미니 데이형 통소 서비스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자립된 생활을 목표로 '나고야 개호예방·인지증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능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운동형 통소 서비스 데이 서비스 센터나 노인보건시설, 피트니스 클럽 등에서 전도방지나 허리다리 근력 유지를 위해 자택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나 체조 등을 합니다.
생활지원 서비스	6.자립지원형 배식 서비스 자립된 생활이나 영양 개선 등을 위해 1 일 1 식을 한도로 자택에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또한, 배달 시에 안부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연락해 드립니다.

◆ 이용한도액

각 서비스(지역 지원형을 제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도가 있습니다. 요 지원 1·2인 분이 개호 서비스까지 함께 이용하신 경우에는 개호 서비스 이용분도 포함한 합계 단위로 판단합니다.

요 지원 1·사업대상자	1 개월당 5,003 단위
요지원 2	1 개월 당 10,473 단위

6. 일반 개호 예방 사업

(1) 일반 개호 예방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

65세 이상인 모든 분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단, 교재비나 숙박비 등 실비 부담이 별도 필요합니다.

보건소	1.이키이키 교실 각 구의 보건소 등에서 인지증 예방이나 운동기능, 영양, 구강 등에 관한 개호예방교실이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의 보건소
복지회관	2 인지증 예방교실 각 구의 복지회관에서 인지증 예방을 위한 운동을 하는 외에 인지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활동에 대해 배우는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의 복지회관
커뮤니티 센터	3.고령자의 활력 장수 추진 사업 커뮤니티 센터 등의 가까운 장소에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취미 교실 등을 통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의 사회복지 협의회
휴양온천 홈 마쓰가시마	4. 건강 이벤트·건강 숙박 플랜 휴양 온천 홈 마쓰가시마에서 보건사 등에 의한 건강상담이나 건강담화를 정기적으로 하는 동시에 건강 지도를 중심으로 한 숙박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나고야시 휴양온천 홈 마쓰가시마 전화 0594-42-3330
대학	5.나고야 건강 칼리지 건강 만들기 계기가 되도록 대학과 연계해서 과학적 근거를 중시한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건강 만들기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건강복지국 건강증진과 전화 972-3078
가까운 장소	6.고령자 살롱 고령자 분이 가까운 장소에서 부담없이 모여서 즐겁게 만나면서 깊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역 주민 분 등이 고령자 살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 사회복지 협의회

7. 이용자 부담 등

(1) 이용자 부담

원칙적으로 소요된 비용(개호보수) 액의 10%(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 분은 20% 또는 30%※)을 부담합니다(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 비용에 관해서는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부담 비율은 본인이나 동일 세대 65 세 이상인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식사와 거주비(체재비), 이발비·미용비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 부담합니다.

※ 이용자 부담 30%는 2018년 8월부터 실시

부담 비율	기준(이하 ①②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8년 8월부터 30%(※1)	①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2)이 220 만엔 이상 ② 동일 세대의 65 세 이상인 분의 연금 수입(※3)과 합계 소득금액(연금 수입에 관계된 소득분을 뺀다)의 합계가 { 단신 세대 340 만엔 이상 { 2명 이상의 세대 463 만엔 이상
20%	①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2)이 160 만엔 이상 ② 동일 세대의 65 세 이상인 분의 연금 수입(※3)과 합계 소득금액(연금 수입에 관계된 소득분을 뺀다)의 합계가 { 단신 세대 280 만엔 이상 { 2명 이상의 세대 346 만엔 이상
10%	상기 이외인 분

• 상기 표에 관계없이 64 세 이하인 분, 시정촌민세 비과세인 분 및 생활보호 등을 받고 있는 분의 부담 비율은 10%입니다.

(※1) 30%가 되는 기준은 2018년 3월 시점에서 정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며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합계 소득금액’이란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연금 소득, 급여 소득, 사업 소득, 토지·건물 등이나 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 등을 합제한 금액입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 소득 금액에 관련된 특별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3) 연금 수입에는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액 개호 서비스 비용

동일세대의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자 부담의 1개월당의 합계가 일정한 상한을 넘을 때는 신청에 의해 고액 개호 서비스 비용으로서 그 초과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복지용구의 구입이나 주택 개수에 관련된 부담, 시설에서의 거주비(체재비)와 식비 등은 고액개호 서비스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부담의 상한〉

(1 개월당)

이용자 부담 단계 구분	상한액
생활보호 수급자 등	15,000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 복지 연금 수급자 • 연금 수입*¹과 합계 소득금액*²의 합계가 80만엔 이하인 분 	15,000엔 (개인)
세대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24,600엔
시정촌민세 과세자가 있는 세대	44,400엔* ³

※1 연금 수입에는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합계 소득금액’이란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연금 소득, 급여 소득, 사업 소득, 토지·건물 등이나 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 등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는 연금 소득 및 토지·건물 등의 양도 소득 금액에 관련된 특별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3 10% 부담자만인 세대(과세 소득 145만엔 이상인 65세 이상의 분이 계신 경우로 세대 내의 65세 이상인 분의 수입 합계가 단신이 383만엔 이상, 두 명 이상이 520만엔 이상인 세대를 제외)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 446,400엔(37,200엔×12개월)이 설정됩니다. [3년간 시한조치(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서비스분까지가 대상)]

(3) 고액의료합산 개호서비스비

‘고령개호서비스비’에 더해 각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피용자보험, 후기고령자의료보험)의 세대내에서 1년간(매년 8월부터 다음해 7월) 의료보험과 개호보험 이용자 부담액을 합산한 액에서 세대 부담한도액을 뺀 금액이 501 엔 이상이 되는 경우 이 한도액을 넘은 분 중 개호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고액의료합산 개호서비스비’로서 지급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개호합산 요양비’로서 의료보험자가 지급합니다.

(4) 거주비·식비의 이용자 부담

개호보험시설 및 단기입소 서비스 거주비(체제비)·식비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이나 세대 과세상황(별도 세대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상황도 감안합니다.)에 따라 이용자 부담 단계가 설정되어 그 단계마다 한도가 정해집니다.

또한, 한도액의 적용은 자산 요건으로서 예저금 등이 일정액(단신 1,000 만엔, 부부 2,000 만엔) 이하여야 합니다.

(5) 인지증 고령자 그룹홈 거주비 조성

인지증 고령자 그룹홈에 입주하는 이하 ①~③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대해 월액 20,000 엔을 상한으로 입주비를 조성합니다.

대상이 되는 분

- ①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 ② 본인의 연금 수입(유족 연금, 장애 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을 포함)과 합계 소득금액* 합계가 80 만엔 이하
- ③ 예금·적금 등이 일정액 이하(단신 1,000 만엔, 부부 2,000 만엔)

※ 합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를 참조.

* 생활보호수급자 또는 중국잔류일본인 등 지원금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성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이용자 부담의 감면

재해를 당해 주택 등에 현저한 손해를 입었거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의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부담 지불이 곤란한 분은 신청에 의해 이용자 부담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 복지과로 상담해 주십시오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상담·문의처

명칭	전화번호	FAX
지쿠사 구청	7 5 3 - 1 8 4 8	7 5 1 - 3 1 2 0
히가시 구청	9 3 4 - 1 1 9 5	9 3 6 - 4 3 0 3
기타 구청	9 1 7 - 6 5 2 3	9 1 4 - 2 1 0 0
구스노키지소	9 0 1 - 2 2 6 9	9 0 2 - 1 8 4 3
니시 구청	5 2 3 - 4 5 1 9	5 2 1 - 0 0 6 7
야마다지소	5 0 1 - 4 9 7 5	5 0 4 - 7 4 0 9
나카무라 구청	4 5 3 - 5 4 2 0	4 5 3 - 8 2 3 2
나카 구청	2 6 5 - 2 3 2 4	2 4 1 - 6 9 8 6
쇼와 구청	7 3 5 - 3 9 1 4	7 3 1 - 8 9 0 0
미즈호 구청	8 5 2 - 9 3 9 6	8 5 1 - 1 3 5 0
아츠타 구청	6 8 3 - 9 4 0 4	6 8 2 - 0 3 4 6
나카가와 구청	3 6 3 - 4 3 2 7	3 5 2 - 7 8 2 4
도미타지소	3 0 1 - 8 3 7 6	3 0 1 - 8 6 6 1
미나토 구청	6 5 4 - 9 7 1 5	6 5 1 - 1 1 9 0
난요지소	3 0 1 - 8 3 4 5	3 0 1 - 8 4 1 1
미나미 구청	8 2 3 - 9 4 1 5	8 1 1 - 6 3 6 6
모리야마 구청	7 9 6 - 4 6 0 3	7 9 3 - 1 4 5 1
시다미지소	7 3 6 - 2 1 9 2	7 3 6 - 4 6 7 0
미도리 구청	6 2 5 - 3 9 6 4	6 2 1 - 6 8 4 1
도쿠시게지소	8 7 5 - 2 2 0 7	8 7 5 - 2 2 1 5
메이토 구청	7 7 8 - 3 0 0 7	7 7 4 - 2 7 8 1
덴파쿠 구청	8 0 7 - 3 8 9 7	8 0 7 - 9 7 2 6

개호에 관한 정보는 나고야시의 홈페이지 『NAGOYA 개호네트』

개호보험 제도의 설명, 개호 서비스 사업자의 검색 등, 나고야시의 개호보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aigo-wel.city.nagoya.jp/view/kaigo/top>

발행 / 나고야시 건강복지국 고령복지부 개호보험과 TEL 972-2537 FAX 972-4147

이 팸플릿은 2018년 8월 현재의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성령 등의 교부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팸플릿은 폐지필프를 포함한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